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93호, 1993년 12월31일)

## ◇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1993. 6. 11. 공포, 법률제4562호)으로 부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감리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종전의 시공감리가 책임감리로 일원화되고, 감리원의 권한도 강화됨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건설부장관은 위 기관 또는 단체중 연구·개발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령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
- 나. 종전에는 종공사비가 10억이상인 토목공사·특수공사 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5층이상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5억이상인 토목공사·특수공사나 연면적이 601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
- 다. 계약단위별 종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은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46조의2).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계약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또는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는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를 받도록 하고, 신공법 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되는 건설공사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설공사의 방지 및 건설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50조 및 제50조의2).
- 마. 감리전문회사의 소속직원으로서 건축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을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51조의2·제52조 및 별표 3).
- 바. 감리전문회사를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건축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기준을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함(령 제53조 및 제54조).
- 사. 감리전문회사가 부실한 감리를 하거나 기타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등록취소·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정하고, 외국감리전문회사가 부실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요구, 6월이내의 수주제한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5).
- 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특정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하고 그를 지원하거나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시공평가대상인 건설공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하였으나, 건설원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그 대상을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함(령 제57조).

(법제처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을”을 “전선로(전선을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지중터널에 한한다)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책임감리”라 함은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술능력등”을 “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경력·기술능력등의 확인”을 “경력·기술능력 및 취업현황등의 확인”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법·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의 기간은 1주이상으로 하되, 건설기술자의 등급별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을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대행)** 건설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관리업무 및 교육훈련업무를 건설기술자단체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150인이내의 위원”을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한때(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건설공사와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2. 제3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제14조 제2항 본문중 “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120인”을 “150인”으로 하고, 동조제 3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3제3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본문중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 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 및 주택사업공체조합

제27조제1항본문중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자료·정보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대상기관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  
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  
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  
술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 및 수행방법
2. 연구책임자의 설명
3.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정  
수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7.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8.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법 제16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  
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  
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4(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①주  
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  
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1. 연구요원의 인건비

2.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요원의 교  
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  
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  
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등의 연구·개발  
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연구·  
개발사업비의 매년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31  
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건  
설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당해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  
는 연구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  
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9조의2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  
수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정수한 때에는 그 정수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  
를 보고하여야 하며, 정수된 기술료는 건  
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연구능률향상,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를 위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의 조  
성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당해연  
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31일까  
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지  
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건설부장관의 권  
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3.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  
급·관리
4. 연구성과의 이용·관리

5. 기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 제목중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를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기술개발투자계획의 제출)”을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술개발투자계획이 건설기술개발에”를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개발투자를”을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을”로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본문중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고시신청서에”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8. 기타 신기술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의 제목 “(신기술의 결정·고시)”를 “(신기술의 지정·고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90일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연구원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

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거나, 신기술지정신청인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본문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에 소요된 비용의 5퍼센트”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해당공종 순공사비의 3퍼센트”로 하며, 동조제2항중 “1년이상 3년이하”를 “2년이상 5년이하”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2(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건설부장관은 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능력, 용역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총공사비”를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로 하며, 동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공사비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하는 관서(이하 “허가관서”라 한다)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제39조제1항제6호본문중 “공사발주관서의 장”을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하 “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39조제2항제1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1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제40조제4항중 “실시되었는 지의”를 “실시되는 지의”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실시되었는 지의”를 “실시되는 지의”로 한다.

제41조제1항본문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중 “10억원이상”을 각각 “5억원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제42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기”를 각각 “건설업자등이”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기타 관계법령

의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기타 관계법령”으로 하고, 동조제 4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으로, “공사감리자를”을 “감리원을”로, “공사감리자로”를 “감리원으로”로 하고, 동조제 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한다.

②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허가 판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관리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건설업자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운반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기관(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시험실시에 따른 비용은 당해 재료를 생산(제작을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품질변화의 원인이 건설업자등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업자등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4조제1항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등이”로 하고, 동항단서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제49조의2 각호의 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를”을 “감리원과 건설업자 등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업자등에게”로,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건설업자는”을 “건설업자등은”으로, “하자보수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완공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품질시험의 비용)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의 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등은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건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전문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2.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3. 공사수행의 안정성
  4.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 ②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한다.
2.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하며, 이하 “계약총공사비”라 한다)가 100억원이 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전문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는 공사
3. 제2호의 경우에 재해발생률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안전점검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사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④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품질시험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을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으로 한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품질시험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 법 제2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건설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품질기준에 맞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품질시험대상 건설자재)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인 자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제외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철강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5. 운반과정 및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예상되는 자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의4(건설자재품질시험의 종류)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 준하여 정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들은 품질시험시설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시험대상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생산자들은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준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를 주문한 자는 표준납품서에 품질시험의 결과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나 그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자재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8조의 제목**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를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공업진흥청 국립공업기술원 및 지방공업기술원

②품질시험대행기관은 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및 시험실 시종목과 전년도의 품질시험대행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상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의 보완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시공감리등”을 “책임감리 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책임감리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4. 토지수용법에 의한 기업자

**제50조의 제목**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

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의 공사로 한다.

가.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나. 계약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설공사로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각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외국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신공법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공사로서 국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기 곤란한 경우

2.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②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감리를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외국감리용역발주신청서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내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수행능력
2. 감리의 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3. 감리기술능력 및 인원의 타당성
4. 기타 감리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1조제1항** “공사발주관서”를 “발주기관”으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책임감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용역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외국의 용역업자를 감리보조자로 선정하여 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2(감리원의 자격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학력경력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연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이 영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기를 지불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감리원의 배치방법, 경력확인 및 관리, 공사현장의 상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감리대가의 기준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대가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①법 제2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감리전문회사, 토목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리전문회사는 건설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특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③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축공사를 제외 한다)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를 할 수 있다.

④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설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특수공사 중 철강재로 설치하는 건축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제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를,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를 각각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3(외국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제한)**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의 해제요구

2.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감리용역의 수주제한

3. 감리원의 교체요구

**제54조의4(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4조의5(등록취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외국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업무수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관련단체·연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당해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공사계획을 검토하고,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

3. 품질시험 및 안전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할 것

4.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5.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6. 매월공사진행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것

7.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할 것

8. 건설법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급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감독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각호의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본문중 “1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10억원미만”을 “30억원미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단서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0조의3(의견진술의 절차)**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의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표 중 종합분야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별표 2]의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표 중 토목분야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폭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과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이상과 화공기사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이상

[별표 2]의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기준표 중 건축분야의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폭품질시험기술사 1인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 1인이상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이상 |

[별표 2]의 비교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표의 기술인력중 토폭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는 국·공립시험기관(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건설재료시험기사 및 화공기사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5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국·공립시험기관에서 3년이상 품질시험업무를 담당한 자로 각각 같음을 수 있음

[별표 3]을 [별표 5]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전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하는 자를 이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개정된 기술자격자
토목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 1항 관련)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감리원 의등급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 사업무를 수행한자, 별 표 1의 기술사 또는 건 축사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3년이상, 석사학위 를 가진 자로서 9년이 상,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이상 건설 공사업무에 수행한 자
특급 감리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 로서 7년이상, 기사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6년이상, 학사학위 를 가진 자로서 9년이 상, 전문대학을 졸업 한자로서 12년이상 건 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감리원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 로서 4년이상, 기사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3년이상, 학사학위 를 가진 자로서 6년이 상, 전문대학을 졸업 한자로서 9년이상, 고 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서 12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감리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건설공 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 는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로서 3년이상, 고등학 교를 졸업한 자로서 6 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또는 학 사학위를 가진 자

#### ※ 비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임직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임직원 또는 감리전문회사·건설업체에서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분야의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별표 4]

감리원의 배치기준(제52조제2항 관련)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고급 감리원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비고

-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감리원의 배치인원의 수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 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의 성질상 특별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표의 기준보다 강화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예정가격의 85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 준적인 감리원의 수보다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5]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종류	감리원	자본금	시설	장비
종합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10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3인이상 이 토목분야기술사, 2인이상이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10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00제곱미터이상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장비를 갖출것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40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20인이상이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토목 감리 전문 회사	1. 토목분야 특급감리원 5인이상. 이 경우 감리원 중 3인이상이 토목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25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10인이상이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건축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5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3인이상이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각 1인이상)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25인 이상. 이 경우 감리원중 10인이상이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비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설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된다.

- 외국의 용역업자와 합작투자한 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의 일부를 외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소정의 학력을 갖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이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기술사·기사1급의 기술자격자는 별표 1에 정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별표 6]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기준(제54조의4 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중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	등록취소
3.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록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6월이내의 업무정지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6.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가.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3월이내의 업무정지
나. 3년이상인 경우	등록취소
7.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때	3월이내의 업무정지
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	3월이내의 업무정지
다.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	6월이내의 업무정지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은 때	1월이내의 업무정지